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1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4. 6.

발 의 자 : 김예지 · 엄태영 · 박완수
김승수 · 이종성 · 추경호
최형두 · 김선교 · 김용판
이주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여야 함.

그런데 「장애인복지법」 등 다른 법률에서는 같은 의미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, 대통령령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에 듣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음.

이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,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2항 · 제6항제3호,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82조제1항제3호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(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”를 “시각장애인, 청각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사람(이하 “시각장애인등”이라 한다)의”로, “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”를 “시각장애인등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“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”를 “시각장애인등으로서”로 한다.

제49조제1항제2호나목 중 “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”를 “시각장애인등이”로 한다.

제82조제1항제3호 중 “듣지 못하는 사람”을 “청각장애인”으로, “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”을 “시각장애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)	제11조(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(이하 같다)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</u> <u>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</u>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(이하 “장애인보조견”이라 한다)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② <u>시각장애인, 청각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사람(이하 “시각장애인등”이라 한다)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각장애인등에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</u> <u>서</u>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	3. <u>시각장애인등으로서</u> ----- ----- -----

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

4. (생 략)

제49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(생 략)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

가. (생 략)

나.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건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

다. (생 략)

3. ~ 13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82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.

1. · 2. (생 략)

3. 듣지 못하는 사람(제1종 운

4. (현행과 같음)

제49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시각장애인등이-----

다. (현행과 같음)

3. ~ 1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2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 ①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청각장애인-----

전면허 중 대형면허·특수면허만 해당한다), <u>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</u>(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·특수면허만 해당한다)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. ~ 7. (생략)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<u>시각장애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4. ~ 7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-